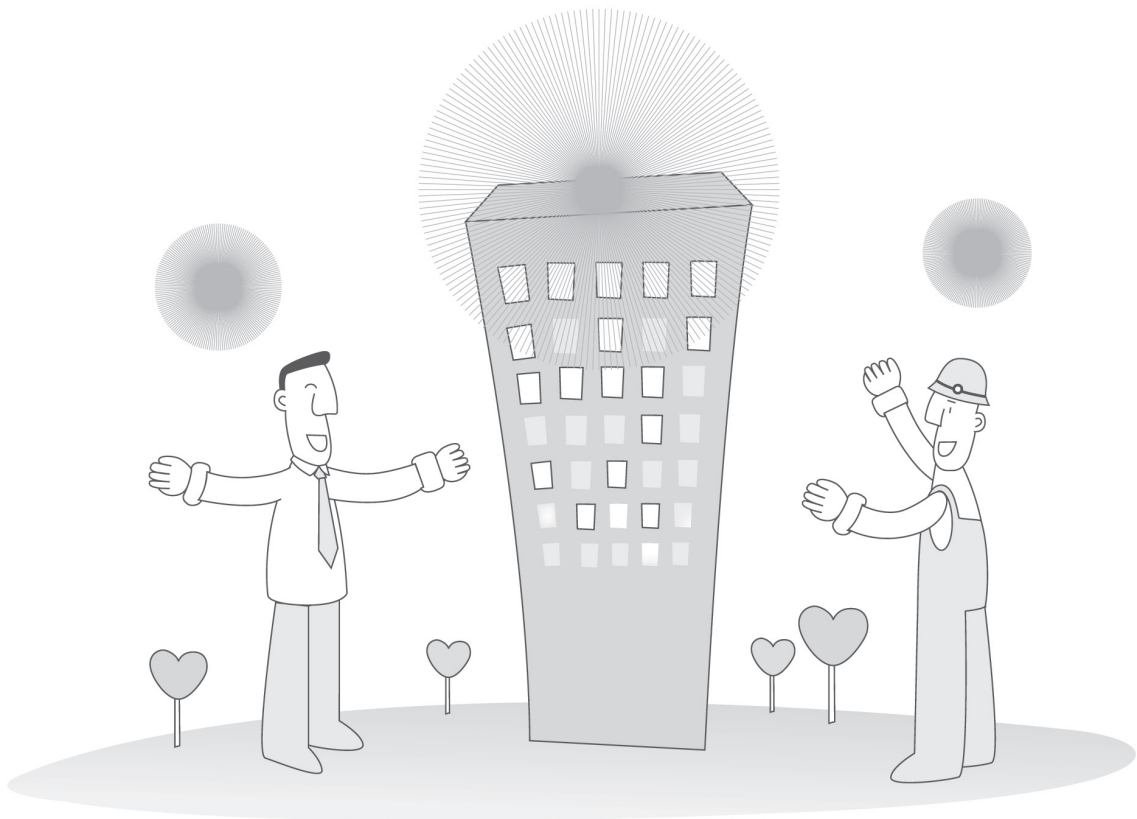


대한설비건설협회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2월 2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0회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은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에 대한 결집된 노력을 비롯하여 직할시 공제,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등 분리발주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편집자 주]

2009년 사업계획 기본방향

2009년은 설비건설발전을 위한 역량을 총집결하여 모든 설비인들이 염원하는 설비관계법 제정에 노력을 결집함은 물론, 우리협회에서 오랫동안 추진하여온 직할시공제 및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등 분리발주 확대에 역점을 두며,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위탁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함

1. 설비건설업 발전을 위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 기계설비공사의 정밀시공에 의한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기계설비건설의 위상강화를 위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제정을 추진함
- 동법 제정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용역 의뢰를 추진하고 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올해를 법 제정 완성의 해로 삼고자 함

2. 직할시공제,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등 분리

발주 확대 추진

- 다중시공계약방식과 유사한 직할시공제(주택공사가 CM역할 수행) 도입에 적극 매진하고,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 추진

3. 국가계약제도 및 불공정하도급제도 개선 추진

- 설비건설업자의 원도급시장 확대를 위해 주계약자형공동도급 제도의 공공공사 도입을 추진하고 자재가격 급등시 적용되는 물가연동제도 개선과 최저가격찰제도 확대 방지에 역점을 뒀은 물론, 회원사 권익옹호를 위해 불공정하도급제도를 개선할 것을 추진함

4. 정부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 정부위탁업무인 시공능력평가·공사와 인정기능사 경력증발급·관리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I. 건설진흥사업

1. 설비건설업 발전을 위한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건설산업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대형화·첨단화되어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계설비에 대한 시공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없어 에너지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설비건설업의 발전이 저해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추진

- ① 기계설비공사의 정밀시공에 의한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기계설비건설의 위상강화를 위해 기계설

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

- ②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입법추진을 위하여 국책연구기관에 용역 의뢰를 비롯한 법제정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올해 법제정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 경주

2. 직할시공제,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등 분리발주 확대 추진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등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관련 정당과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주택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에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직할시공제 도입을 추진

- ① 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보금자리주택(10년간 150

만가구 보급) 건설 시 공사원가 절감을 위해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과 유사한 직할시공제(주택공사가 CM역할 수행)를 도입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 ②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도회와 협력하여 전국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홍보 추진

※ CM에 의한 다중시공계약방식 : 기계설비공사 등 중요 전문공사를 분리발주하여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고 CM이 전체적인 공정 및 시공관리 역할 수행(발주자가 CM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직할시공제)

3.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설비건설업자의 원도급시장 확대를 위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의 공공공사 도입을 추진하고 자재가격 급등 시 적용되는 물가연동제도를 개선하며, 정부예산 절감에 따른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방지 추진

4. 불공정 하도급제도 개선 추진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토록 하고, 부당한 특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관련법에 명시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개선하여 원·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추진

- ① 원자재가격 급등 시 하도급가격 강제 조정 추진
 - ② 하도급계약 시 설계변경대금 미지급, 자재구매처 지정 등 부당한 특약 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③ 원·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추진
-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와 PQ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5. 건설노무관련법령 제도개선 및 홍보

건설노무관련 개정 법령 검토와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노무비율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6.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 ①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플랜트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 ② 해외건설공사의 수주현황 등의 정보수집과 회원사의 공사수주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와의 협의 및 지원

II. 기술진흥사업

1. 인정기능사경력증 발급 및 관리

정부의 위탁사업인 기능사경력인정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 ① 인정기능사경력증 년 2회 신청서 접수와 실기검정 실시 및 경력증발급·관리

2. 건설기능경기대회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건설기능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단체총연합회와 공동개최

- ①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를 선발하여 추천하고 경기대회 참가자교육 및 홍보

3. 설비기술자 기술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위탁교육

회원의 기술자 능력향상을 위하여 서울산업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설비기술인의 전문성 제고

- ① 기계설비공학과 학사과정 개설(회원사 임직원대상 3학년 편입 정규 학사과정 모집)

- ② 대학원 기계설비 최고전문가과정 및 에너지기계 설비공학과 석·박사과정 개설

4. 설비기자재 가격 현실화

회원사의 설비기자재 구매단가를 조사·분석하여 설비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이 되는 설비기자재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5.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정 보완

기계설비부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제·개정에 참여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책정 도모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년2회 공표하는 실적공사비 적용단가에 적정한 단가가 반영되도록 실적단가조사 및 분석
- ② 정부 표준품셈 제·개정작업에 적정한 품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표준일위대가표 등 발간

6. 설비관련 시공기준 개정·보완 및 시공품질 점검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공기준정비 및 설비공사 분리발주확대를 위한 시공품질 점검

- ①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설비설계기준 및 관련지침 등을 개정·보완하여 설비공사 품질향상

7. 기술관련법령 제도개선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축법, 제조물책임법 등 기술 관련 제도개선 추진

8.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 ①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현안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 ② 자동제어공사 업역확대와 공사수주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와 협의 추진

Ⅲ. 가스진흥사업

1. 가스관련법령제도 연구 및 개선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 등에서 규정한 시공관련제도 및 관련고시를 가스시공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식경제부 또는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

- ① 시공감리수수료 및 완성검사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 및 협의 추진
- ② 시공감리행정처리지침(시공감리처리절차) 및 도시가스검사업무(기술검토처리기준 및 가스공급시설시공감리세부기준) 처리지침의 민원조항 제도 개선 추진
- ③ 가스관련 법령을 비롯한 가스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중 가스시공과 관련된 내용을 회원사의 업역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 추진
- ④ 도시가스사용자공급관의 설치·변경공사 시 공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
- ⑤ 도시가스시설 전공정 시공감리 대상을 사용자공급관은 일부공정시공감리 대상으로 제도 개선 추진

2.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개선 추진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한 업무와 기술검토를 사전 제출토록 하거나 자체시방에 따르도록 강요함은 물론 가스공급 지연행위 등을 개선하고, 과다한 서류제출방지와 시공자의 제출서류를 표준화하여 전국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

3. 가스설비관련 표준품셈 개정 보완

정부표준품셈 제·개정에 참여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책정을 도모코자 함

4. 가스시공관련 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지식경제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학회, 언론사 등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강습회에 참여하여 발표 내용을 토대로 가스시공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하여 회원사에 안내

5. 가스관련법령 개정 자료집 인쇄·배포

가스시공과 관련된 각종 법령 개정내용 및 질의해설집 등의 자료 책자를 가스시공업 회원사에 인쇄·배포하고 우리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6. 가스회원사 간담회 참석

가스관련법령, 시공감리업무지침 등에 대한 개정규정을 각 시·도회 가스회원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설명

7. 가스설비공사협의회 및 가스시공실무연구회

- ① 가스설비공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정부에 제도 개선 추진
- ② 가스시공실무연구회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에 기술적 개선사항의 제도 개선 추진

- ③ 2009년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와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회원사, 유관기관 및 발주처에 제공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홍보 및 통보

- ①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위반업체를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추진함에 따라 건설산업 하도급 위반사례 방지를 위하여 계도 및 홍보추진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실적을 토대로 아래 위반사항을 파악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시·군·구청)에 통보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미달 업체 및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설공사도급 받은 업체
 -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미달업체(최근 2년간 연평균액이 5천만원 미만)

3. 2009년도 전국 회원명부 발간

기계설비공사업체 및 가스시공업체(1종)의 홍보와 더불어 회원사, 유관기관 및 발주처의 자료로 활용토록 회원명부 발간·배포

4. 회원봉사관련 소관위원회

업계의 품위보전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포상·징계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윤리위원회 개최

5. 기타 회원봉사사업

- ① 회원사 애로사항 및 경영활동지원
- ② 일반건설업체 부도시 회원사 보호업무 지원 강화
- ③ 과당경쟁 덤핑자제 촉구 등 건전한 거래 확립계도와 무등록업자 시공근절 및 홍보지도

IV.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1. 시공능력평가·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위탁업무인 설비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신고 등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 추진

- ① 인터넷 실적신고 보급 확대 추진 및 성실신고를 위한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 ② 공사실적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위실적, 재하도급실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공능력을 정확히 평가

6.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건설업 임금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기계설비관련 직종에 대한 시중 노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설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조사하여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추진

- ① 설비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합리적 반영 추진을 위한 시중 노임단가 및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7. 설비건설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 ① 통계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설비건설업의 통계조사 업무를 확충 발전
- ② 2008년도분 설비건설업체의 계약실적, 기성실적을 공종별, 계약방법별, 공사규모별 등으로 분류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회원사의 경영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V. 정보화사업

1.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보완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

- ①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통하여 더욱 향상된 사이버협회의 위상강화 및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향상
- ② 전산관리시스템(H/W, S/W)과 데이터베이스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회원사 서비스 유지

2. 2009년도 적용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발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되는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발표하여 조달청, 행

정자치부 등 전국 발주기관에서 적용토록 함

3.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① 협회 등록업체(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체일반현황, 행정처분, 공사실적자료, 통계자료, 시공능력평가자료, 인정기능사관리자료 등의 정확한 전산업무처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 ② 각종 바이러스와 외부 침입자에 대한 시스템 보안 유지관리와 서버 및 장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관리

4. 대내·외 전산정보 관련 업무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자료제공
- ② 대내·외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

VI. 기획·관리사업

1. 협회 발전계획 수립

협회의 기능 활성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 ① 협회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도회 활동지원 및 조직 강화
- ② 정부 위탁업무개발 및 수용태세 강화, 조직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제규정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합리적 운영관리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성과의 극대화와 예산낭비 억제

- ① 사업심사 분석 및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 집행 유도

3. 회의운영

- ① 총회(정기, 임시) 및 이사회(수시)개최
 - 사업계획, 예산, 결산, 정관변경 등 의결
 - 주요업무 집행에 관한사항과 규정의 제·개정 등 의결
- ② 시·도회장회의(수시) 및 기타 회의개최 운영
 - 업계 현안문제와 회원사 권익관련사항 협의

4. 협회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

2009. 11. 25. 협회 창립 제20주년을 맞아 건설관련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설비건설업계의 재도약 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기념식 거행

5. 해외 설비건설 유관단체와의 상호교류

설비건설업계의 해외진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외국 의 설비건설관련 단체와 국제협력 양해각서체결 및 상호교류체제 구축

- ① 양해각서 체결국가와 업계간 유대강화
- ② 기타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설비건설제도 정보수집 및 교류확대

6. 건설의 날 행사 개최협조

건설진흥 촉진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2009. 6월 예정)

- ① 우리 협회를 포함한 건설관련 18개 단체가 주관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
- ② 건설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추천

7. 유관단체 유대관리

설비건설 유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금 협조

- ① 기계설비협의회(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냉동공조협회, 설비엔지니어링협의회)
- ②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설관련 18개 단체) 및 하

도급분쟁조정협의회(건설 3개 단체)

8. 일반관리

- ① 직원 인사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 ② 회비수납·결산 및 재산운영·관리
- ③ 시·도회 사무처의 업무지도 및 운영감독

VII. 홍보사업

1. 월간 “설비건설” 발간·배포

- ① 발행부수 : 매월 5,500부
- ② 배 포 처
 - 회원사, 종합건설회사, 설비·설계용역회사, 건설관련 발주관서 및 관련단체, 설비관련 기자재회사 등
- ③ 주요 수록 내용
 - 협회·조합 소식, 회원·조합원사 소식, 법령개정 및 건설관련 정보, 신기술·신공법 소개, 해외기술 정보 등
- ④ 광고수주 활성화 및 설비관련기자재 정보 제공

2. 대내·외 홍보강화

- ① 언론 홍보
 - 국내 일간지, 건설관련 전문지 등 언론에 협회 활동현황 및 업무추진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② 회원사에 대한 협회 추진업무 홍보 및 협회 홍보용 동영상·홍보책자 제작

3. 월간 “설비건설” 편집위원회 개최

- ① 매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월간 “설비건설” 편집방향 수립
- ②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